



## 제2장 전입신고



제1절 미성년자 전입신고

제2절 전입신고 처리

제3절 전입신고 위임

제4절 전입신고 일반



주 · 민 · 등 · 록 · 질 · 의 · 회 · 신 · 사 · 례 · 집

제1절

미성년자 전입신고



**01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 방법****회신**

- 전입신고서의 '전세대주 또는 본인' 확인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본인(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)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후견인)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다만,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장은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
- 미성년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미성년자가 거주사실 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음

**02 외국인 모가 미성년 자녀를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**

☞ 친권자인 엄마(외국인)가 남편과 이혼하고, 남편세대의 세대원으로 있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을 엄마가 사는 곳으로 전입시키려 함. 엄마가 외국인이라 미성년자가 세대주로 세대구성 하여야 하는데, 전세대주인 아빠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

**회신**

-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고를 할 수 없으며,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가 없다면 미성년자 본인이 신고인이 될 수는 있음
- 다만, 전세대주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, 미성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'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'에 본인이나 전세대주의 서명(날인) 대신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서 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할 수 있음

**03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****회신**

- 동일 세대에 성년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.
- 다만, 세대원의 사망·실종·가출·국외이주 등으로 세대원 중 미성년자만 있을 경우에 세대주가 될 수 있음

- 또한, 국제결혼가정의 자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모와 거주할 경우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음



#### 04 미성년자를 전입신고

- ☞ 저는 만9개월 된 아기가 있음. 성격차이와 남편의 술문제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, 일년 넘게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아기의 주소를 현재 사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자 하는데 방법은?

##### 회신

- 남편의 세대원으로 있는 자녀를 귀하의 세대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라면 전세대주(자녀의 세대주인 전남편)의 확인을 받아야 함.
- 다만, 전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읍면동장의 사실조사(미성년자인 자녀가 실제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)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판단



#### 05 세대주가 조모,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부모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

- ☞ 세대주인 조모가 아이를 편입시키려고 하는데 전세대주인 부 또는 친권자인 모가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?

##### 회신

-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인 조모가 하여야 함
- 그리고 아버지가 조모의 직계혈족이라면 아버지도 위임을 받아 신고 가능



#### 06 미성년자 단독세대주 가능 여부

- ☞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단독으로 별도의 주소에 세대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

## 회신

-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음.
- 모 또는 세대원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나, 거주사실대로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거부할 수 없음.
-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다면 읍면동장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



## 07 미성년자 단독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

☞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처리가 가능한지?

## 회신

-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·관리하는 제도이므로 미성년자인 어린이가 거주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이 사실이면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가능.
- 이 경우 미성년자의 본인 확인은 읍면동장이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



## 08 만4세 아동의 단독세대주로 전입

☞ 만4세 아동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함. 단독 세대주로 전입시키고자하는데 전입이 가능한지요?

## 회신

- 주민등록법 제12조는 합숙사에 있어서의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관리자가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제16조(거주지의 이동)에 따라 합숙사의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단독세대주로 구성 가능



## 09 세대주인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전세대주의 확인

- ☞ 미성년자가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타세대로 편입할 경우 전입신고 시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는 누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?

회신

- "전세대주의 확인" 즉 친권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며,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읍·면·동장이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
  - ※ 각 사례별 "전세대주 또는 본인확인" / "전입신고인"
    - 미성년자가 세대주(전 거주지) → 세대주(신거주지)
      - ☞ 사실조사로 같음
    - 미성년자가 세대원(전 거주지) → 세대주(신거주지)
      - ☞ 전 세대주 확인이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실조사로 같음
    - 미성년자가 세대주(전 거주지) → 세대원(신거주지)
      - ☞ 사실조사로 같음
  - ※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 전입신고 가능



10 친권자 확인 없이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

- ☞ 친권자인 모의 세대에 있던 미성년자를 이혼한 남편이 친권자인 모 확인 없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친권자인 모의 확인이 없으므로 전 주소지로 직권정정 해야 하나요?

회신

- “전세대주의 확인”을 받아서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하지만 “전세대주의 확인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읍·면·동의 사실조사로 같음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결과 부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입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직권정정 안해도 됨



11 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증 발급받은 미성년자가 서명

- ☞ 부(父)의 세대에 있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을 이혼한 미성년자의 모(母)가 모의 세대로 전입신고 함
- ☞ '전세대주 또는 본인' 확인은 자녀 중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첫째가 함
- ☞ 통장 사후확인, 당사자 진술,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를 확인함
- ☞ 부(父)는 둘째 자녀의 전입신고는 전세대주의 확인이 없었으므로 최소해 줄 것을 요구함. 이 경우 둘째의 전입신고 취소 가능한지?

## 회신

- 전입지의 세대주인 모(母)가 미성년자 자녀의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자 중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미성년자 자녀가 '전세대주 또는 본인'란에 서명을 하였다면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읍면동장은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
- 또한, 전입신고시 전(前) 거주지 세대원이 신(新)거주지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전입자 대표 1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둘째 자녀의 전입 또한 본인 서명을 한 첫째 자녀가 대표로 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, 사실조사 시 실제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전입신고는 취소 사유가 없음



## 12 미성년자 전입 시 전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## 회신
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전입신고를 접수할 경우 전입신고서(시행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)의 '전 세대주 확인'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본인(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)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후견인)의 확인(서명 또는 날인)을 받아야 함
- 다만,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



주 · 민 · 등 · 록 · 질 · 의 · 회 · 신 · 사 · 례 · 집

제2절  
전입신고 처리



**13 철거지역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하나요?****회신**

- 주민등록법 제8조(등록의 신고주의 원칙)에 따라 비닐하우스에서 실제 거주중이며 철거를 위해 주민의 이주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전입신고 가능

**14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**

- ☞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무단 설치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관할 면사무소에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임
- ☞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?

**회신**

- 대법원은 '09.6.18.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, 시장 등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결
-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에서는 30일 이상 거주목적만을 심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신고된 내용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권조치를 할 수 있음

**15 노인시설, 아동보호시설, 요양원 등에 전입신고**

- ☞ 노인시설, 아동보호시설, 요양원에 전입신고 시 시설장이나 직원이 방문하여 해당자를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?

**회신**

- 해당자가 단독세대주로 전입하는 경우 시설장이나 직원이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. 이 경우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 여부 결정
- <신고인>을 대상으로 하여 전입신고서, 서면위임장, 입원(입소)확인서를 시설장이나 직원이 제출하는 경우 사실조사 실시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 결정



### 16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

☞ 식당업을 하는 자로 식당에 거주를 하는 시설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, 근린생활시설인 식당에 전입신고 가능여부?

#### 회신

- 대법원은 '09.6.18.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, 시장 등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하였음
-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, 관할 행정관청은 해당 주민이 상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둘 수 있는지 여부를 생계와 숙식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



### 17 병원에 전입신고 가능여부?

☞ 민원인께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데, 병원 병실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?

#### 회신

- 주민등록제도에서 '거주'는 특정 세대가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거주지(장소)에는 숙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취사 및 가재도구 등이 부속되어 있어야 하며, 거주의 목적이 특정 생활장소에 머무르는 '기거'와 구별됨
- 예를 들면 영내군인이 병영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거나, 일반인이 아침부터 밤늦게 직장에 머무르는 경우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기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
- 따라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생활한다 하더라도 병원 병실은 주거지가 아닌 기거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



### 18 재개발 지역 또는 철거단계에 들어간 건물에 전입신고

☞ 재개발 지역 또는 철거단계에 들어간 건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?

## 회신

- 재개발지역 또는 철거단계에 들어간 건물 등 주민의 이주가 시작된 지역 등에 거주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행정청이 판단하였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



## 19 전입신고 금지요청 가능 여부

- ☞ A번지의 소유주가 A번지에 전입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수리하지 말 것을 요청
- ☞ 이런 경우 건물 소유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입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?

## 회신

- 주민등록법상 건물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타인의 전입신고를 금지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
- 전입신고를 수리한 후 사후확인을 하여 허위전입에 대한 고발조치 및 벌칙(법 제37조)을 적용



## 20 수감자의 전입신고

## 회신

- 수감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표시로 타인에게 위임하고 수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음(수감증명서, 서면위임장, 전입신고서)
- 다만, 전입신고 주소지는 가족, 친척, 지인 등 수감자의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



## 21 재혼한 부인의“자”를 전입 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

- ☞ 전남편과 이혼한 부인이 재혼한 남편과 새로 세대를 구성하면서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을 “자”로 해줄 수 있는지요?

회신

- 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해서 해야 할 것임. 사실상 전입신고 시 세대주와의 관계는 민원인 신고하는 대로 하고 있지만 명백히 재혼한 남편과 친자관계가 아닌 자를 “자”로 올릴 수 없을 것임
- 그러나 “모”를 세대주로 할 경우 “자”로 등재할 수 있음
  - ※ 재혼가정의 자는 세대주(재혼한 부 또는 모)와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에 기재되므로 동거인이 아님 (세대주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)



22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처조모가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

- ☞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처조모가 전입신고할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에 처조모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?

회신

- 처조모, 즉 처의 할머니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“장조모”로 표시되고 있음. 처조부의 경우에는 “장조부”로 표시되는 것으로 처조모와 장조모는 같은 의미임. 따라서 장조모로 처리하여야 함



23 전입신고 취소 가능여부

- ☞ 전입신고 후 이미 처리된 전입신고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?

회신

- 주민등록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함. 다만,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착오나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통하여 전입신고 수리가 무효인 경우에 한해서는 전입신고의 철회가 가능

**24 전입신고 소급 가능여부**

- ☞ 거주지를 이동한 지 4년이 지났다고 전입신고일을 4년 전으로 하여 전입신고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?

**회신**

- 주민등록은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주민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
-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전입신고 행위가 없었으므로 전입일자 소급 불가. 다만, 대상자가 정당하게 전입신고 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착오로 전입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전입일자 소급처리

**25 전입과 동시 세대합가 후 세대주변경**

- ☞ 세대주(A)이었던 자가 세대주(B)인 세대로 전입해 세대주로 될 경우 처리방법은?

**회신**

- 전입처리 후 세대합가를 하면서 세대주 결정을 하면 되며, 전입신고구분을 세대합가로 표시하고, 세대주는 A로, 전세대주는 B로 하여 한꺼번에 처리

**26 동일번지 내 타 세대 세대원으로서의 전입**

- ☞ 동일번지 내에 A세대와 B세대가 있는데, B세대 세대원이 A세대 세대원으로 들어 갈려고 하는데 전입처리가 가능한지요?

**회신**

- 이 경우는 B세대원이 A세대, 즉 다른 세대로 편입되는 것으로 전입신고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고, '전세대주 또는 본인'은 전입자 본인(B세대원)이어야 함
-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편입되어야 하며, 처리 후 전산에 나오는 주소이력을 보면 "동일 주소내 전입"으로 나옴(2016.8.1.)



### 27 실수로 잘못 전입신고 처리한 경우 직권 정정

☞ A 지역에서 B 지역 주민을 실수로 전입신고 처리한 경우(공무원 착오) A 지역으로 전입되었던 주소이력을 없앨 수 있나요?

#### 회신

• 다른 대상자를 전입처리한 경우 직권정리 방법

1. 잘못 처리한 대상자를 전출지 행정기관에 연락하여 다시 전입처리 하도록 요청함 (이때, 전출입은 1일 1회 처리만 가능하므로 전입지에서 [자료관리-직권정리-개인일반사항정리]의 (초본)변동일자, 변동신고일자를 전일자로 수정 후 전입처리 함)
2. [자료관리-직권정리-개인일반사항정리]에서 작업구분을 [1-세대편입일 및 편입사유]로 선택하고 변경 후 내역의(초본)변동사유, 변동일자, 변동신고일자와 (거소)전입사유, 일자를 이전의 상태로 변경함 : 세대전부 세대구성으로 재전입 처리한 경우가 아니면 (등본)편입사유, 일자도 변경함



### 28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층·호수 기재

☞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층·호수 기재를 요구하는 주소정정 신고 시 수리 여부

#### 회신
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(주민등록표 등의 기록)에 따라 다가구 주택 및 준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, 동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으나, 공법상 주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등 초본에 기재하지는 않고 있음.
- 다만, 원룸, 다가구 주택 등 건축물 대장에 동·층·호가 표기되지 않는 건물에도 건물의 소유자·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의 경우처럼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표에 표기가 가능함



### 29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주소 기재

☞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공동주택 명칭과 동·호수의 표시는 없으나, 거주자의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재 시 지번 다음에 “2층B호” 또는 “2층서쪽”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

## 회신

-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고 있으므로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하는 기관의 각종 공부의 기재와 활용에 차질이 없으면서 전산처리, 공부의 표준화 등 업무수행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므로,
-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상 근거 없는 “2층B호”나 “2층서쪽”등의 표시나 과거 일부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표시 등은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기재하여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



## 30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

- ☞ 주민등록증 뒷면은 주소변동 사항을 현재 거주지에서 전 거주지의 변동사항도 기재해 줄 수 있는지?

## 회신

-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주소변동사항을 기재하고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입지에서 하여야 할 것이나, 주소변동사항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이전 주소변동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국 어느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의 원부나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증명내용의 정확한 정리 및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그 이전의 전입사항도 기재해 주어야 할 것임



## 31 아파트 명칭 없이 전입신

- ☞ 아파트의 경우 도로명주소와 동, 호수만으로 전입처리 가능한지, 반드시 아파트 명칭이 있어야 하는지?

## 회신

- 아파트의 이름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'참고항목'이므로 아파트 이름 없이 도로명 주소(도로명, 건물번호, 동, 호수)만으로 전입신고 가능함
- 추후 건축물대장에 아파트 이름이 등재되어 도로명 주소 '참고 항목'에 아파트 이름 등재를 요청할 경우 '정정신고'를 받아 정정 가능

- 행정기관이 직권 정정시에는 해당 주민으로 하여금 정정하도록 최고·공고한 후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통보하여 주민이 직권 정정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함



### 32 전입신고 금지요청 가능 여부

- ☞ A건물 소유자 B는 임차인 C와의 토지 및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던 중 A건물로의 지속적인 전입신고로 인하여 1,2차 강제집행이 집행 불능으로 처리되어 A 건물로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를 요청함

#### 회신

-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고주의 원칙(법 제8조)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수리하고 있으며, 신고사항을 통·리장을 통해 사후 확인함(시행령 제15조)
- 건물소유주의 전입신고 불수리 요청 권한은 주민등록법령에 근거가 없으며, 사후 확인을 통하여 전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



### 33 아동복지 시설에 각 아동들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

- ☞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세대원으로 전입해 있는 아이들을 각각 세대주로 해도 되는지?
- ☞ 아이들을 각각 단독세대주로 분리하는 경우,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제출받아서 처리해야 하는지?

#### 회신

- 주민등록법 제12조는 합숙사에 있어서의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관리자가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제16조(거주지의 이동)에 따라 합숙사의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단독세대주로 구성 가능
-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제출받아서 처리

주 · 민 · 등 · 록 · 질 · 의 · 회 · 신 · 사 · 례 · 집

제3절  
전입신고 위임



**34 직계혈족의 범위**

- ☞ 세대주의 위임만 있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계혈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?

**회신**

-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, 나를 기준으로 부모, 조부모, 증조부모, 자녀, 손, 증손 등이 해당되며, 형제자매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. 그리고 부모가 이혼 했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는 직계혈족 관계는 유지됨

**35 전입신고의무자 중 “세대를 관리하는 자”**

- ☞ 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배우자가 "세대를 관리하는 자"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?

**회신**

- 세대를 관리하는 자는 세대원이어야 함.
- 부부라 할지라도 주소지가 다르다면 세대원이라 볼 수 없고, 당연히 세대를 관리하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.
- 다만,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 위임을 받아서 신고할 수 있음

**36 전입신고서의 위임범위, 위임신고 요령**

- ☞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위임할 수 있는지?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사람이 구비해야 하는 것은?

**회신**

- 전입신고 시 세대주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위임받은 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서명 또는 확인을 받아 전입신고 하여야 함



### 37 동거인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

☞ 동거인을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 보아서 세대전부를 다른 곳으로 전입할 때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?

#### 회신

-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동거인은 제외하고 있음. 그러므로 동거인이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자격으로 전입 신고하는 것은 불가



### 38 주민등록 대리 전입신고

☞ 타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대리로 할 수 있는지 여부

#### 회신

-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, 이때 신고의무자는 세대주,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로부터 위임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하도록 되어 있음
- 특히, 1994. 7. 1부터 전출신고제도가 없어지면서 통·이장 사전 확인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또 전입신고 후 즉시 주민등록표의 등·초본 등이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이래 거짓전입신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의무자의 철저한 신분확인이 요구됨에 따라 전입신고를 신고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대리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
- 다만, 단독 세대주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전입의사 등을 확인한 후 예외적으로 대리신고(재등록 포함)가 가능하며, 대리신고 시 병원 등 입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음
- 또한,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(세대전원 또는 단독세대주가 해외유학, 파견, 취업 등)가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영사관(또는 대사관)으로부터 서면위임장에 확인받고 위임받은 자가 전입신고(재등록)를 할 수 있음



### 39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동거인을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?

- ☞ 세대원 편입 시에는 현세대주의 위임으로 세대원을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? 편입하는 세대원이 동거인인 경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는 것인지?

### 회신

- 전입신고 수리 시 새로운 거주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됨.  
동거인이 세대편입을 하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음



## 40 본인의 배우자 전입신고 위임 관련

- ☞ 본인이 타세대 세대원으로 편입할 경우 본인의 배우자에게 위임이 가능한지?

### 회신

- 편입하는 본인이나 신세대주, 신세대주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위임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



## 41 형제·자매의 전입신고 위임

- ☞ 동일 제적 내 가족인 형제·자매에게 전입신고 위임이 가능한지?

### 회신

- 제적부상 동일가족인 형제·자매에게는 전입신고를 위임할 수 없음



## 42 위임받은 말소자가 전입신고 가능 여부

- ☞ 이민출국, 현지이주말소자도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으로서 주민등록에 대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?

회신

- 불가
- 주민등록법 제11조의 신고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자를 전제로 하며, 이민출국말소자, 현지이주말소자는 주민등록자가 아니므로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음

주 · 민 · 등 · 록 · 질 · 의 · 회 · 신 · 사 · 례 · 집

제4절  
전입신고 일반



**43 본인이 전입신고**

- ☞ 본인이 전입신고 시 전입지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나요?

**회신**

- 주민등록제도상,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가 '본인'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(본인의 신고)에 따라야 하며 세대주의 확인(서명 또는 인)이 필요하되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

**44 전입자의 의사확인**

- ☞ 민원인인 전입당사자는 전혀 전입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, 전입 당사자의 전입의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가 수리됨에 전입신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
- ☞ 전입신고 수리 시 전입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요?

**회신**

-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하여 신고의무자인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관련 요건을 갖추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전입자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있으며, 만약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전입자가 주장한다면 사실확인 후 수사의뢰 할 수 있음

**45 30일 이상 거주에 관한 문의?**

- ☞ 전입신고 후 반드시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해야 하나요?

**회신**

- 주민등록법 제6조(대상자)제1항에는 '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'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30일 이상 거주할 "목적"이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달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



### 46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

- ☞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입신고 후 통장 사후확인과 관련하여 통장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

#### 회신

-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제1항제2호에는 ‘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’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- 주민등록법 제10조(신고사항)제1항제7호에는 ‘주소’를 당연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15조(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)에 의거하여 신고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 통장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



### 47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입신고의 자격이 있나요?

#### 회신

- 전 거주지의 세대주는 세대원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할 수 없음  
전입신고 시 신고의무자인 세대주는 항상 신거주지 중심으로 생각하면 됨



### 48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자의 처리

- ☞ 전입신고를 하고 30일이 지나지 않은 자가 또 다시 다른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의 신고서 처리여부

#### 회신

-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또 다른 사정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서의 수리 가능

**49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증 내용란 정리요령**

☞ 전입신고자가 주민등록증 뒷면 변경내용란 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?

**회신**

-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뒷면정리를 하여야 함. 그러나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국 어느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정리할 수 있음
- 전입세대의 일부가 장기출타 중으로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뒷면 변경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안내
- 현역 영내 군인은 변경내용란을 정리하지 않으므로 현역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
-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

**50 전입자의 세대구성일자 기준**

☞ 세대주의 일부전출 또는 전입으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때 세대구성 일자는?

**회신**

- 전 거주지에서 세대주 일부전출로 인하여 남은 가족중에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전출일자(전입신고 전일)를, 신거주지에서 일부전입으로 세대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일자를 세대구성일로 함

**51 영내군인의 주민등록 직권이송**

☞ 독신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록된 자가 입영하였을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직권 이송할 수 있는지

회신

- 동거인이라 함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며, 여기에는 친척인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하숙, 고용인 등 일시적으로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경우도 있음
  - “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”이라 하였으므로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단순한 동거인을 뜻한다고 해석되는 바
  - 법 제6조 제2항에서 “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” 하였으므로
  - 해당 세대주로 하여금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거나 현주민등록지에서 그대로 잔류시킬 수는 있으나 읍·면·동장이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이송할 수는 없음
- ※ 참고로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 할 수 없음



52 주민등록 등본상의 전입신고일자 기준 확인

☞ 1994.6.30 이전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“전입일 변동과 변동일 사유란”이 있는데 위 사항 중 어느 것이 전입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?

회신

- 1994. 6. 30. 이전에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거주지를 이동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전출 신고를 하고 전출신고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“전입일자”는 전출신고 익일, “변동일자”는 전입신고일자였으나, 1994.7.1부터 전입신고 1회제 실시로 전출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입일자과 전입신고일자는 동일한 날짜가 됨



53 동일일자 이중전입신고자 처리

☞ 동일일자에 “갑”지에 전입신고한 후 “을”지에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“을”지에서 전입신고한 일자를 다음날짜로 각종대장을 정리해야 하는지?

## 회신

- 전입신고서 접수대장, 주민등록표 등 관련대장 일체와 주민등록증을 정리하고 전입신고일자를 익일자로 정리하여야 하며(동일자 거주지가 중복되기 때문임) 전입신고서 접수 시에는 민원인에게 익일자로 정리됨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할 것임



## 54 1주소에 2세대 또는 수 지번에 1세대 거주지 수리여부

- ☞ 사회통념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에 2세대 이상의 주민등록을 신청할 경우와 건축물관리대장상 수개의 지번이 등재되어 있을 때 당사자가 임의로 한 번지를 택하여 주민등록 주소로 신고할 경우

## 회신

- “세대”란 사회통념상 동일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영위하는 것을 뜻하므로 아파트 등의 경우 여러 세대의 주민등록은 어려울 것이나 임대차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장이 거주여부에 관한 사실확인을 실시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
- 건축물관리대장상 1동(棟)의 건물이 수개의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주민등록주소는 주민등록사항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, 아파트 등의 경우 같은 동(棟)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일치시킴이 합리적이라 사료됨



## 55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

## 회신

- 전입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며, 세대주가 할 수 없는 경우에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할 수 있음. 이때 전입신고서의 세대주 확인, 전세대주 및 본인 확인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, 이 경우에는 세대원이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과 확인(서명 또는 날인)이 있어야 함



## 56 나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곳의 전입신고 시 수리여부

☞ 나대지나 도로 등에 전입신고 시에도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나?

**회신**

- 나대지나 도로 등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 시 이를 발견하였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하여야 함
- 전입신고수리 당시 이러한 내용을 몰랐더라도 통(리)장 사후확인, 사실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면 직권조치하고 거짓신고가 명확할 경우에는 고발조치
  - ※ 불법건축물이라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
- 전입신고 당시 거주 가능한 건축물이 확인되어 전입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, 이후 재개발, 자연재해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되어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부명등록 절차 진행



**57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 가능여부**

☞ 투기목적 등으로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하려는 경우 수리해야 하는지?

**회신**

- 대법원은 2009.6.18.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, 시장 등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하였음
- 따라서, 투기목적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고 주민등록에서는 30일 이상 거주목적만을 심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,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전입신고 후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



**58 전입신고 시 신분증 지참 여부**

☞ 전입신고 시 본인이 올 경우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올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지?

**회신**

- 본인이 올 경우 주민전산의 화상사진을 통해 확인하거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질의하여 본인여부가 확인이 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됨

-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올 경우, 전입신고서 양식<작성방법>에 보면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께서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
- 따라서 세대주가 오지 못하여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임



## 59 숙박업소에 주민등록 가능여부

### 회신

-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일시적인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소 등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다만, 사안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(주거할 곳이 없는 자 등) 그 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숙박업소의 주인(건물소유자)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



## 60 세대 일부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전입신고

☞ 전에 살던 곳에 부(75세), 자1(48세), 자2(46세) 이렇게 있었는데, 자2가 전입신고서 신고인이 되면서 자1, 자2 두 명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, 이 경우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신고인인 자2의 도장날인만 찍어도 2명 전부를 전입시킬 수 있나요?

### 회신

-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한 세대일부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(전입자가 성인이며 여러 명인 경우)에 "전세대주 또는 본인"란에는 그 중 한 사람의 확인을 받으면 전입신고 가능



## 61 신종 숙박시설 등에 전입신고 가능여부

☞ 신종 숙박시설인 고시원, 고시텔 등에 전입신고 수리 시 처리요령은?

회신

- 고시원 등에서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개별적 취사를 할 수 없으므로 취사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없이 30일 이상 숙박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입실증을 확인 후 전입조치함



62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신축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여

회신

- 주택 신축 등의 경우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관계기관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입주하도록 되어 있음.
-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지역 시장·군수·구청장(주민등록담당부서)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아파트의 안전도, 사용검사 가능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·처리하는 것이 바람직



63 주거형 오피스텔 등 주민등록 여부

☞ 주거형 오피스텔, 주거형 실버타운, 주거형 콘도미니엄 등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

회신

-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
- 따라서 법의 목적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도모에 있으므로 거주하는 곳이 주거형태의 요건을 갖추고 생활의 근거지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임



64 다가구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시 처리방법

☞ 전입한 주소가 다가구주택이었는데, 재건축하여 다세대주택이 되었음

☞ 주소 이전한 적이 없다면 이때 주소변경은 정정인지, 전입인지?

### 회신

- 정정으로 처리
- 전입신고는 '거주지를 이동하면' (법 제16조) 신고하므로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면 전입이 아닌 정정(공동주택변경, 코드번호57)으로 처리



## 65 다가구 주택내에서 거주지 이동 시(호수 변경) 처리 방법

- ☞ 다가구 주택 3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1층으로 이사
- ☞ 다가구주택이므로 공법상 주소변동이 없고, 전산의 기타주소만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처리 방법
- ☞ 실제 이사를 했으니 동일 주소지내 전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?
- ☞ 공법상 주소는 변동이 없으니 전산상 기타주소만 변경처리 하는 것인지?

### 회신

- 정정으로 처리.
- 실제 이사를 했어도 공법상 주소변동 없으니 정정신고서 받아 전산상 기타 주소만 변경처리



## 66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, 14일에 공휴일 포함 유무

### 회신

- 포함.
-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며 익일 종료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바, 기간 중 공휴일은 포함해서 생각하면 됨



## 67 수감증명서로 '서명/인' 대체 가능 여부

- ☞ 세대편입하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수감중인 경우, 세대주 '서명이나 인'대신 수감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
- ☞ 세대주 정정 시에도 서명이나 인 대신 수감증명서로 가능한지?

**회신**

- 수감증명서가 사실조사를 갈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수감증명서로 대체 가능
- 정정신고 시 전세대주의 확인도 수감증명서로 가능



**68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방법**

**회신**

- 민원인이 시·군·구 지적과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고, 지적과에서 판단해서 상세주소 부여하면 신청자에게 통보를 함
- 민원인이 그 상세주소를 기재해달라는 정정신고를 하면 정정처리



**69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방법**

- ☞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으나 사망신고 접수 처리 전에 새 주소로 전입신고시 처리 방법

**회신**

- 사망이후 사망자에 대한 전입신고 요청은 무효 대상임
- 사망자를 제외하고 전입신고 처리하며, 이후 사망자 주소지에서 사망 신고토록 안내



**70 종교단체시설에 다수의 단독세대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**

## 회신

- '종교단체시설'이 주민등록법 제12조상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,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시 읍면동의 사실조사 결과를 근거로 단독 세대 구성이 가능함



## 71 전입신고 수리 기준인 거주 여부의 판

- ☞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 없이 카라반과 텐트를 두고 생활을 하고 있으며, 취침을 하고 있지 않으나, 농작물 관리를 위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
- ☞ 주민등록제도에서는 30일 이상 거주목적만을 판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, 이동 가능성이 높은 카라반 및 텐트에 주소이전이 가능한지?

-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하여야 하며, 이 거주지는 숙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취사 및 가재도구 등이 부속되어야 함
  - 따라서 건축물은 없고 농작지에 카라반과 텐트를 두고 취침을 하지 않으며, 취사 및 가재도구 등이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 관리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라면,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
- 다만, 읍면동에서는 생계와 숙식여부, 우편물 수령 여부, 수도·전기 사용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거주여부를 판단하여야 함



## 72 의사 무능력자(치매) 본인 방문 전입신고

- ☞ 의사 무능력자(치매) 본인이 외손녀와 방문하여 요양원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러 올
- ☞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여 확인할 수 없음에도 전입신고 가능한지?

## 회신

- 미성년자(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)의 전입신고 처리를 준용하여 '전 세대주 또는 본인' 확인란에 확인이 불가하므로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후견인)의 확인을 받아야 함

- 다만,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사실 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.
- 즉 '전 세대주 또는 본인'의 확인을 대체하는 사실조사는 전입신고 수리 전에 실시하여야 함



**73 주소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변경('17.7.1,시행)**

☞ 출생신고 착오로 2월 30일 등 없는 날짜를 생년월일로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?

- 전입신고와 함께 타권역으로의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휴대폰 번호 입력 및 수수료 부과 사실 안내

구분	동일 권역		타 권역	
	3개월 이내	3개월 연장	3개월 이내	3개월 연장
개인(1인당)	무료	4,000원	7,000원	7,000원
단체(법인·사업자)	무료	53,000원	70,000원	70,000원

※ 타권역으로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 시 기한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 취소됨



**74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법 1**

**회신**

- 90일 이상 해외체류자(유학, 해외주재원 등)는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,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 할 수 있음('17.12.3.시행)



**75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법2**

☞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해외체류중임. 국내에 들어올수 없는 경우 행정상관리주소로 신고하기를 원함

## 회신

- 출국하려는 사람이 현재 속한 세대의 세대주가 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주소가 변경되는 일자는 신고일임(시행령 부칙 제2조)
- 또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재외공관 확인 받는 위임장으로 위임 받은자(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자)가 해외체류신고 가능
- 위임 받는자가 신고한 날부터 해외체류자로 관리됨



## 76 주소, 거소와 주민등록지 주소의 차이점

## 회신

- 민법 제18조에 의하면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주소(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음)가 되며, 주소가 없이 얼마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 거소가 됨. 주민등록은 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보고 있음
- ※ 공법 : 법률관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이들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

